

2023년 청탁금지법 상담 사례

(‘24. 2. 1., 감사팀)

상담번호	2023-001	상담시기	2023년 5월 24일
상담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질의사항	중앙행정기관 통계조사에 응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?		
답변 내용	<p>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이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그 대가는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 응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.</p> <p>※ 본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타 법의 적용 및 위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		

상담번호	2023-002	상담시기	2023년 8월 28일
상담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질의사항	외부강의 사례금과 출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?		
답변 내용	<p>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사례금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 따라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중복수령이 되어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.</p> <p>※ 본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향후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타 법의 적용 및 위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/p>		